

(주)아모레퍼시픽 경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39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11 조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권한)

위원회는 제 8 조의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경영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고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 4 조 (대표위원)

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(종류)

(삭제)

제 6 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대표위원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경영에 관한 사항
 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 - (3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(4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- (5) 조직, 인사,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
 - (6) 사업계획·사업구조조정 추진
 - (7) 해외 지사·현지법인 등의 신규진출, 이전 및 철수

- (8)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- (9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- (10)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3) 기타 주요 경영현안

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각 항의 사항 중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- (1) 자기자본 1%이상 2.5%미만의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- (2) 자기자본 1%이상 2.5%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- (3) 자기자본 2.5%이상 5%미만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의 신설 및 차입계약 체결
- (4) 자산총액 1%이상 2.5%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
- (5) 증여 및 기부금 제공
- (6) 사채의 모집
- (7) 자기주식(신탁계약 체결 포함)의 취득 또는 처분
- (8)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
- (9)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
- (10)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대표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2 조 (간 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7 년 8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4.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